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

의 안 번 호 제 2949호

제출년월일 2021. 11. . 제 출 자 김계순의원

1. 제안이유

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독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)
- 다.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 및 평정자, 확인자 규정(안 제9조~제10조)
- 라. 다른 기관 전입공무원의 자격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: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생략
 - 나) 예고결과 :
 - 2) 부서협의
 - 가) 협의기간 : 해당없음
 - 나) 협의결과 :
 - 3)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) 김포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의 승진·전보·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) 김포시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에게 내부행정망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설치 및 구성) ①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둔다.
 -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과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9조의2를 따른다.
- 제5조(기밀유지)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 부친 사항 중 의장이 공식 발표한 사항 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6조(기본원칙) ①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내 인사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7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)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의장이 작성·관리한다.
- 제8조(승진임용방법)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법정배수 대상인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.
- 제9조(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) ①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

- 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.
-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지방 공무원 평정규칙」을 따른다.
- 제10조(평정자 및 확인자)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을 따른다.
 - 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피평정자의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평정시기) 정기평정은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, 명부는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
- 제12조(전보)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의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3조(특수 분야 근무자관리) 의장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자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장기근무(승진 후포함)하게 할 수 있다.
- 제14조(근무부서 배치)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부서를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한다.
- 제15조(다른 기관 전입) ① 전입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시·도, 시·도의회, 시·군·구 및 시·군·구의회와의 인사교류가 있을 때와 결원이 발생할 때에 실시한다.
 - ② 전입대상공무원은 직무의 종류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다른 기관 전입공무원의 자격) ① 결원발생에 따른 전입대상은 근무능력, 성실도,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되,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전입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승진임용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- 2.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
- 3.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4. 그 밖에 전입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- ② 전입공무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 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, 심사내용 및 위원 등의 세부내용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7조(그 밖의 공무원 인사관리) 모든 공무원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,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